

#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

농림축산식품부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축산물(축종 : 한우, 돼지, 닭고기, 계란, 낙농, 오리) 수급안정 정책, 산업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(이하 “장관”이라 한다) 및 관련단체 등에게 의견을 제출한다.

1. 축산물 수급상황 분석에 관한 사항
  - 가. 연간 수급전망 및 과부족량, 가격전망 등
  - 나.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가격등락폭이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기의 수준 판단
2. 축산물 수급상황별 대응방안 등에 관한 사항
  - 가. 수급안정을 위한 수급상황별 대응방안 등 마련
  - 나. 적정 사육마리수·원유생산량, 적정 가격(생산자·소비자) 및 수급 안정대를 벗어나는 수준별 위기단계(주의·경계·심각) 기준 설정
3. 수급안정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
  - 가. 공급부족 해소 또는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 장려 및 감축 등에 관한 실행 사항
  - 나.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소비홍보에 관한 사항
  - 다. 수급안정정책 추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
4. 축종별 산업발전 방안 등에 관한 사항
5. 기타 장관이 의견을 요청하거나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및 협의회 운

## 영 등에 관한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, 당연직과 선정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

1.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
2.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 담당
3.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담당 상무
4. 해당 축종의 생산자 단체장
5. 낙농진흥회 회장

③ 제1항에 따른 선정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장관이 선정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그 일부는 해당 축종별로 회원 수를 고려하여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.

1. 축산물 수급에 관련되는 유통·가공업계 대표 및 소비자단체 대표
  2. 학계, 연구계 등에서 축산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가진 자
- ④ 협의회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공익(정부, 학계, 소비자)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**제4조(임기)** 협의회장을 포함한 선정 위원의 임기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, 선정 당시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잔여임기를 승계한다. 다만, 당연직 협의회장 및 위원은 임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**제5조(협의회 운영)**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.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.

- 가. 정기회의 : 분기별 1회
  - 나. 임시회의 : 협의회장 또는 위원 1/2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
- ②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소집하며, 이 경우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③ 협의회 회의안건의 원활한 작성 등을 위해 사무국이 관련 기관·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
- 가. 농협중앙회 : 축산물 가격조사, 해외동향 등
- 나. 통계청 : 가축동향 및 축산물 생산비 조사 등
- 다. 지자체 : 행정통계(사육농가 등 현황) 등
- 라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: 수출입정보, 소비자가격 등
- 마. 한국농촌경제연구원 : 축산관측 및 중기 선행예측 정보 등
- 바. 축산물품질평가원 : 축산물 이력제·등급제 관련정보, 축산물 가격정보 등
- 사. 해당 축종 생산자단체 : 사육동향(입식, 출하 등) 및 자체조사 가격동향 등

제6조(심의 의결) ① 협의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개회하고, 출석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협의회별로 심의 의결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결의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7조(협의회장의 권한 및 임무)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협의회의 의견 결정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협의회장의 의사결정에 따른다.

④ 수급동향 및 정책판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대리 출석) 협의회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기관·단체의 차하위자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무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.

**제9조(실무 추진단 설치)**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이 소속한 기관·단체의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실무추진단 구성, 운영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.

**제10조(사무국)**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한육우는 (사)전국한우협회, 돼지는 (사)대한한돈협회, 닭고기는 (사)한국계육협회, 계란은 (사)대한양계협회, 낙농은 낙농진흥회, 오리는 (사)한국오리협회에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수급 및 가격동향 실무 분석
2. 수급 및 가격안정, 산업발전방안 관련 연구 추진
3. 회의 소집 문서발송, 회의장 설치 등 행정지원
4. 사전 회의자료 작성 및 결과보고 등 협의회 운영 실무업무
5. 협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6. 실무추진단 운영 시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

**제11조(수당 등의 지급)** 협의회 위원(실무추진단 위원 포함)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, 여비 및 사무국 운영비 등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(비밀준수 의무)** 협의회의 위원(실무단 위원 포함)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외부 및 이해관계자 등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## 부칙 <제58호, 2013.9.23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존속기한)** 이 규정은 2016년 9월 24일까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